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09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백혜련 · 맹성규 · 이재정
이강일 · 김영호 · 염태영
이수진 · 남인순 · 김 윤
부승찬 · 진선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 및 치과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안 제30조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2.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정보를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 ③ (생략)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u>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u> 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신설></u>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 1. <u>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u> 2.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정보를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